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로,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으로, “제5조제2항제2호의2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
2. 영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서류(이 경우 다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시·군·구”를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시·도”를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군·구”를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시·도, 시·군·구”를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시·도,”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시·도, 시·군·구”를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허가·지정과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교부
3. 제10조에 따른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4. 제11조에 따른 지정서 교부
5.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고마약류 보고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신청인 (취급승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의 명칭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업소의 소재지	
	취급의 목적 및 개요	

취급하려는 마약류 또는 원 료물질	품명	수량
	취급기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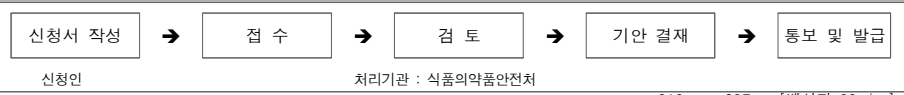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

첨부서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반출승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취급승인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에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취급승인 신청) ----- ----- ----- ----- ----- ----- ----- ----- ----- ----- . ---- 다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u> ----- --- <u>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u>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 ----- ----- -----. <u>1.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u> <u>2. 영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u>
<u><신 설></u>	

	하는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 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 는 서류(이 경우 다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 약품으로서의 대마”로 한다)
제8조(허가의 신청) ①·② (생략)	제8조(허가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해당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기록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u>특별자치시장</u> <u>· 시장 · 군수 · 구청장</u> ----- ----- ----- ----- ----- ----- ----- ----- -----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증 교부) 제8조의 규정	제9조(허가증 교부) -----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
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
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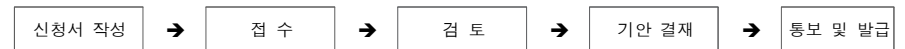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	-----	-----	------	---

신청인 (취급승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의 명칭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업소의 소재지	
	취급의 목적 및 개요	

취급하려는 마약류 또는 원 료물질	품명	수량
	취급기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마 운반·보관·소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급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재배지	재배면적		
인수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내용	운반(보관·소지)기간			
	운반(보관·소지)장소		인계장소	
	운반(보관·소지)목적			
운반(보관·소지)대마	종류	수량	비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의 운반·보관·소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 호

위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나.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나. 진료기록
-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 다. 국내의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반출승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신청인 (대표자)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관리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원료물질제조업자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취급물질(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한함)		
마약류 관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사면허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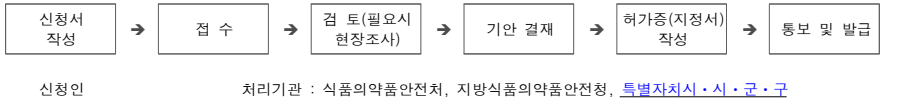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4. 약사면허증(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약사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1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답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우편 등의 경우
		31,000원	3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

210mm×297mm [백상지 80g/㎡]

제 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1. 업 종:
2. 업소의 명칭:
3. 업소의 소재지:
4. 대 표 자:
5. 생 년 월 일:
6. 허 가 조 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이
유
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80g/m²]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제 호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생 년 월 일:
4. 소 재 지:
5. 마약류관리자 성명: (약사면허번호:)
6. 지 정 조 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5일 특별자치시·시·군·구 : 1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허가(지정)연월일
	업소의 소재지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	----------

신청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구분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우편 등의 경우
		허가증	25,000원	28,000원
		지정서	10,000원	12,000원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상실자와의 관계	

자격 상실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종별
	성명		생년월일
	재배지		재배면적

내용	자격상실사유	허가조건
	상속인 등의 계속재배 여부	

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대마	종류	재배면적(수량)	재배지	비고
	섭유 또는 종자 채취 기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대마재배 보고서

보고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재배지				
보고사항	종류	재배면적	생산현황	수량	비고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초의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 등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대마폐기 보고서

보고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재배지			
	재배면적			
폐기처분한 대마의 종류 및 수량	종류	규격	수량	비고
	폐기방법			
	폐기일시		폐기장소	
참관자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초의 폐기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